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세 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47
----------	---------

발의연월일 : 2024. 4. 15.

발 의 자 : 최세진, 고찬양, 홍재희,
이종숙, 이충현, 김희동,
박성호, 강선영

1. 제안이유

가. 의료관광 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특구
협회의 이익을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에게 환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협의회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
간 동안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 효율적인 협회
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구협의회 사회공헌 분과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및 안 제8조제1항)

나. 특구협의회 협의회장 및 분과위원장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4항)

다. 띄어쓰기 등 조문을 일괄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나. 협조부서 : 보건소 의약과

다. 입법예고 : 2024. 4. 23. ~ 4. 29.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제1항”을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특례법」 제2장제2절”을 “「특례법」 제2장제2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식”을 “외식, 사회공헌”으로 한다.

제4조 중 “은 「도로교통법」 제6조”를 “은 「도로교통법」 제6조”로, “시 「특례법」 제33조”를 “시 「특례법」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례법」 제44조”를 “「특례법」 제44조”로,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을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으로, “시 「특례법」 제46조”를 “시 「특례법」 제46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외식”을 “외식, 사회공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 차례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미라클메디 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특례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3. (생 략) 4.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협의회”(이하 “특구협의회”라 한다)란 의료관광 활성화는 물론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료관광의 연관산업(의료, 유치, 쇼핑, 숙박, <u>외식</u>)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p>제1조(목적) --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제1항----- -----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특례법」 제2장제2절----- -----. 3. (현행과 같음) 4. ----- ----- ----- ----- ----- ----- <u>외식, 사회공헌</u>----- -----.

현행	개정안
<p>제4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허준테마연계 사업 및 지역문화 특화사업(축제나 문화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통행금지 또는 제한조치) 추진 시 「특례법」 제33조 규제특례를 적용한다.</p> <p>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구청장은 특구 구역 내에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법」 제44조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p>	<p>제4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은 「도로교통법」 제6조----- ----- ----- ----- ----- 시 「특례법」 제33조 -----.</p> <p>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 ----- 「특례법」 제44조 -----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p>

현 행	개 정 안
<p>한 법률에 관한 특례) <u>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 추진 시 「특례법」 제46조 규제특례를 적용한다.</u></p> <p>1. 2. (생략)</p> <p>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특구협회는 분과별(의료, 유치, 쇼핑, 숙박, <u>외식</u>) 사업자 중 신청에 의해 구성하되 의료관광특구에 걸맞게 환경, 위생, 안전, 시설 등을 확인하고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특구협의회 회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②·③ (생략)</p> <p>④ 협의회장과 분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u>한 차례 연임</u>할 수 있다.</p> <p>⑤ ~ ⑨ (생략)</p>	<p>한 법률에 관한 특례) <u>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u>-----</p> <p>-----</p> <p>-----</p> <p>-----</p> <p>----- 시 「<u>특례법</u>」 제46조 -----</p> <p>-----.</p> <p>1. 2. (현행과 같음)</p> <p>제8조(구성 및 운영) ① -----</p> <p>-----</p> <p>----- <u>외식, 사회공헌</u>-----</p> <p>-----</p> <p>-----</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 <u>연임</u>-----</p> <p>-----.</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례의 제정)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2. 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3. 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협업 및 발전 방안
 4.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4.]